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376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325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237622 판결

전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가경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095,689원 및 그 중 87,078,881원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2022. 6. 2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1. 12.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2. 1. 4. 접수 제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5. 6. 17.경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22. 6. 1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31.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25. 2.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2 보증약정 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20. 12. 30.부터 연 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2022. 3.경 신용보증사고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2. 5. 23. C은행에 제1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채무원리금 37,333,263원을, D은행에 제2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채무원리금 50,316,4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22. 5. 23.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잔여 대위변제금 87,078,881원과

자연손해금 16,808원을 합한 87,095,689원이다.

라. 피고 A은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1. 12. 15. 협의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의 2021. 12. 20.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2. 1. 4.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87,095,689원 및 그중 잔여 대위변제금 87,078,881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6.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을 야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2021. 12. 15. 협의이혼하고 2021. 12. 20.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피고들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A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점, ② 피고 A의 외도가 이혼의 한 원인이 된 점, ③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인천 E 대 707㎡(이하 ‘주유소 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과 이혼하면서 주유소 부지 및 주유소는 피고 A의 소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 A은 2021. 11. 5.경 주유소 부지 및 주유소를 매매대금 합계 2,0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한 위 각 부동산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는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황미정